

	안식학기제 운영규칙		규정번호	3-2-11
			제정일자	1997.08.01
	개정일자	2013.06.01		
	개정번호	Ver.5	총페이지	4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전임교원의 안식학기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격) 본 대학 발전에 공이 있으며 25년 이상 근속한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한다. 단, 안식학기 종료후 10년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.

제3조(신청 및 선발) ① 안식학기 신청자는 [별첨 1]의 신청서와 [별첨 2]의 학과(부)장 추천서를 첨부하여 기획처장을 경유, 총장에게 신청한다. <개정 2013.6.1>
 ② 안식학기제 대상자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이 결정한다.

제4조(기간) 안식학기의 기간은 1개 학기로 한다.

제5조(복무) 안식학기 기간중에는 강의 및 학생지도가 면제되나 타기관 출강이나 기타 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.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총장이 소환하면 응해야 한다.

제6조(준용규정)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.

제7조(규정의 개정) 이 규칙의 개정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허락을 받아 개정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199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첨 1]

안식학기 신청서

				결						
				과장	부처장	처장	부총장	총장		
				재						
신청자	소속		직위		성명					
안식학기 신청기간										
안식학기 기간중 연락	연락처			부재중 연락자 성명 및 관계						
<p><u>안식학기 기간중 계획</u></p>										

※ 직무계획은 관련 분야 연구, 자료수집, 집필 및 기타 예정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상기와 같이 안식학기를 갖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0 . . .

위 신청인

①

동양미래대학교총장 귀하

[별첨 2]

안식학기 추천서

신청자	소속		직위		성명	
안식학기 신청기간						
안식학기중 담당과목 대강계획		과목명	시수	담당교수(강사)	비고	
신청자 공적사항						

상기와 같이 안식학기를 추천합니다.

. . .

학과(부)장,

인